2020년은 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입니다.



##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필리핀산 닭고기 및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금지 조치 알림

- 1. 귀사(기관)의 동·축산물 검역업무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- 2. 필리핀 농업부의 누에바에시하(Nueva Ecija)주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HPAI 발생사실 발표와 관련하여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(농식품부 고시 제2020-17호, 2020.2.13.)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필리핀산 닭고기 및 가금이외의 조류(애완조류)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□ 수입금지 대상
    - 2020.3.16. 이후 선적되는 필리핀산 닭고기 및 가금이외의 조류(애완조류)
    - ※ 단, 3.16. 이전에 선적된 필리핀산 가금이외의 조류는 계류 후 임상검사 및 HPAI 정밀검사(항원검사)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합격 조치, 닭고기는 현물검사 강화 및 필요시 정밀검사
  - □ 수입금지 제외 대상
    - 「지정검역물의 멸균·살균·가공의 범위와 기준」에 해당되는 물품. 끝.

##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

수신자 동축산물 수입(대행)업체 29개소, FEDEX 등 특급탁송업체 39개소, (주)대한항공기내식사업본부, (주)엘에스 지스카이쉐프 코리아, 대한항공 등 항공사 76개소, 인천세관장

화물검역과장 <sup>전결 2020.</sup> 4. 13.

주무관

협조자

시행 화물검역과-1673

접수

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, (정부합동청사) 227호 / http://www.qia.go.kr

전화번호 032-740-2678 팩스번호 032-740-2082 / tankjs@korea.kr / 대국민 공개